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전화(02)731-6486-9/전송731-6497/담당:김정숙

문서번호 부녀 65260 - 782

시행일자 '94. 8. 17

(경유)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3 년	
국장	전 결	/
과장	결	법무담당관 항
계장	김정숙	
기안	김정숙	협조

제 목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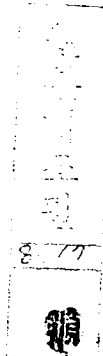
1. 시장방침 제1308호 ('94. 6.30)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을 별첨 공고(안)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 가. 게재종별 : 시보게재
 - 나. 게재건명 :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다.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사무처리규칙 제13조
- 첨 부 공고(안)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 2 안)

수신 공보1담당관

제 목 시보 게재의뢰



1.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을 별첨 공고(안)과 같이 입법예고코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게재종별 : 시보게재
 - 나. 게재건명 :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녀 65260 -

(731 - 6487)

'94. 8.

다.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사무처리규칙 제13조

첨 부 공고문 2부. 끝.

부 녀 복 지 과 장



2-2

054

54

공 고 (안)

공고일자	1994. 8. 16	제 243 호
담당자	김민기	김민기
	김민기	김민기

서울특별시공고 제 1994 -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8.

서울특별시장

1. 개정취지

서울특별시에서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부녀복지관의 이용대상이 저소득층 여성의 감소와 중산층 이상 여성의 증가 추세에 있어 복지관 사용료를 시민 소득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함으로써, 복지관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현행	조정안	
기술교육 수강료	1인 1월	3,000원	7,000원	주 5회 기준
생활·문화 수강료	"	5,000원	7,000원	주 1회 기준
유아 보육료	"	2,000원	5,0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4.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부녀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731 - 6486 ~ 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